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대학생연합아마추어천문동아리 별빛이라 칭하며 약칭 별빛(The starrylight)이라 부른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구성) 본회는 각 학교에 아마추어 천문동아리가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별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의 모임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자유로운 천문 활동을 통하여 아마추어 천문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연구와 취미활동 및 친목을 도모한다.

제4조(활동 및 집회)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 ① 정기 관측회 및 학술 발표회를 가진다.
- ② 본회의 활동 내용, 내역을 홈페이지와 별빛 SNS에 게시한다.
- ③ 정기총회를 가진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및 선발) 본회의 목적에 동조하는 대학교 1~4학년생으로 본회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① 정회원 - 매 분기 3회 이상의 정규 활동과 전체 활동 기간 중 1회 이상의 세미나 진행자로, 임원단의 승인을 받은 자(임원단은 회장, 학술부장, 관측부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사진부장으로 한다.)
- ② 준회원 - 임원단의 승인이 있기 전의 신입회원
- ③ 특별회원 - 정회원 중 유학, 어학연수, 군 입대 등에 준하고 임원단이 인정하는 사유로서 일정 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자
- ④ 명예회원 - 정회원을 거친 자로서 대학교 졸업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권리 및 의무)

- ① 본 회의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본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이 중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 ③ 매 분기 3회 이상의 정규 활동(세미나, 관측회) 참여, 전체 활동 기간 중 1회 이상의 세미나를 한 준회원에 한 해 정회원으로 승급된다. 이때 정규 활동은 매달 열리는 세미나와 관측회를 참여한 경우만 인정되며, 세미나는 졸업 전 진행한 것만 인정한다. (2023.08.05)
- ④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제의권을 가진다.

제8조(제명)

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명 발의 한다.

- 1) 본회 목적에 위배하는 행동을 한 자
- 2) 본회 명예를 훼손한 자
- 3)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을 제외하고, 한 번이라도 회비를 미납한 자 (이때 회비는 매 분기 걷는다.)
- 4) 당해 임원진을 정당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 5) 사실이 아닌 거짓, 의혹만으로 임원 또는 타 회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살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② 회원은 임원단 회의에서 발의하여 총회에 상정한 후 제8조 제3항을 거쳐 제명한다. 준회원의 제명은 임원단이 재량에 맡긴다. 할 경우 임원단 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의결 - 총회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나 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임원단 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의할 경우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되 본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증거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불충분할 경우 임원단 회의를 거쳐 기각한다.

제3장 임원단

제9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단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부장 - 학술부장, 관측부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사진부장 각 1명

제10조(지위, 권한 및 의무)

① 회장

- 1) 본회를 대표하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든 총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대 내외의 업무를 처리하고 본회의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모든 총회, 회의에서 의장 및 사회자가 된다.
- 3) 본회의 활동을 총괄하며, 각부 부장의 담당 범위 외의 활동 및 행사를 진행할 의무를 진다.

② 각부 부장 - 각 부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정기총회와 각종 행사를 회장과 함께 관장한다.

제1부(학술부장) 본회의 천문 활동에 필요한 이론적인 분야의 질적 향상에 힘쓴다.

- 1) 학술부는 자체 의결권을 가진다.
- 2) 세미나 자료실(일반 자료실)을 관리하며 본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학술 활동을 담당한다.
- 3) 학술 세미나 공지 게시 및 진행(집행)을 담당하며, 학술부의 전달 사항은 일주일 이전에 직접 공고한다.

제2부 (총무부장) 본회의 각종 활동에 대한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매 분기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보고한다.

- 1) 총무부는 자체 의결권을 가진다.
- 2) 본회 회계 게시판을 관리하며,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모든 활동의 정산을 담당한다.
- 3) 본회 계좌와 회계장부를 관리 및 보존해야 하고, 총무부 전달 사항은 일주일 이전에 직접 공고한다.

제3부 (관측부장) 본회의 천문 관측 활동에 필요한 기술 발전에 힘쓴다.

- 1) 관측부는 자체 의결권을 가진다.
- 2) 본회와 관측부에 필요한 관측과 기술에 관한 교육을 행하고 관측 장비 및 관측회 준비를 한다.
- 3) 관측부 일지를 관리해야 하며 관측부 전달 사항은 일주일 이전에 직접 공고한다.

제4부 (홍보부장) 본회 활동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에 힘쓴다.

- 1) 편집부는 자체 의결권을 가지는데 이는 편집부장이 관장한다.
- 2) 본회 활동을 담는 SNS 계정 및 게시물 관리한다.
- 3)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 홍보를 담당하며 신입생 모집에 힘쓴다.

제5부 (사진부장) 본회의 천문 관측 활동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공유하는데 힘쓴다.

- 1) 사진부는 자체 의결권을 가진다.
- 2) 본회 갤러리 게시板上에 관측회 및 기타 활동을 담은 사진을 게시한다.
- 3) 본회 드라이브를 관리하며, 2)의 자료를 업로드한다.

제11조(선출 및 자격) 회장과 각 부 부장은 정회원으로, 임원진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준해 임원진 회의를 통해 구성한다. 단, 선출의 근거와 구성을 새로운 임원진 임기 시작 이전에 홈페이지와 본회 단체 연락망(카톡)에 게시하여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자격 박탈)

- ① 본회 운영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2/3의 찬성으로 회장직을 박탈하며 임시총회가 열리기까지 임원단 내에서 선출한 임원이 회장직을 대리한다.
- ② 본회 활동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임원은 임원단 회의에서 발의하여 총회에 상정, 의결하여 권고 징계 및 자격 박탈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원은 자격을 박탈한 후, 다른 정회원으로 임원을 재선출한다.

제13조(임기)

- ①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재임할 수 없다.
- ② 임원단은 동아리의 모든 결정사항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만일, 이것이 지속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임원단 회의 또는 총회를 거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4조(경비)

- ① 본회의 모든 경비는 정회원과 준회원이 납부하는 정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② 회비 관련 사항은 총무부가 담당하되, 지출 시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③ 회비 금액은 임원단 회의에서 발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 ④ 각 정회원과 준회원이 재학하는 총 기간을 납부 기간으로 하되, 회비는 한 학기 1번으로 한다. 단 8학기를 초과하지 않는다. (졸업 이후 회비 낼 필요 없음)
- ⑤ 회비는 총부가 직접 관리하는 본회 계좌로 송금한다.

제15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1개월로 한다.

제16조(경비의 인출 및 보고) 경비를 사용할 때 총무는 기록 후 2월과 8월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7조(위약금) 송년회 등의 무박 행사 시, 행사 당일까지 무통보 무단 불참자는 참가비의 50%를 약속 이행 비용으로 지불한다. 이때 무통보 무단 참/늦참자는 참가비를 100% 지불해야 한다.

제18조(사용내역 공개) 회비의 사용 내역은 최소 한 분기마다 별빛 회계 게시판과 별빛 단체 채팅방에 상세히 공개하도록 한다.

제5장 홈페이지 관리

제19조(관리)

- ① 홈페이지는 회원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체적인 방향 및 변경에 관한 최종적인 사항은 임원진이 정하되,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6장 관측회

제20조(관측비)

- ① 정기 관측회는 3.0만 원, 원정 관측회는 3.5만 원을 원칙으로 한다.(2024.10.26)
- ② 관측회 참여 여부는 홈페이지 댓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관측비 납부 후 취소'는 50%를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염병,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의 경우는 임원진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 '숙소 인원 확정 이후 취소'는 관측비 중 숙소에 대해 0% 환

불, 즉 100% 지불하도록 한다.

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늦참', '당일 참/불참/늦참 통보' 및 '무단 불참'은 관측비 0% 환불, 즉 100% 지불하도록 한다.

제7장 회칙

제21조(해석) 회칙 해석 중 문제가 있을 경우 임원진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제20조를 따른다.

제22조(개정)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한다.

제23조(제안) 회칙 개정을 원하는 회원은 안건을 일주일 전에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24조(확정)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25조(공포) 회칙 개정안이 확정된 후 회장은 즉시 회원들에게 공포하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